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774	권영진의원 등 12인	’24.10.21.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12.23.)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9.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889	엄태영의원 등 10인	’24.12.26.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2.18.)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9.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907	김도읍의원 등 10인	’24.12.26.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2.18.)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9.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385	송기헌의원 등 11인	’25.8.27.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9.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인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및 각종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공간정보 기반 행정 및 산업의 규모가 증대되고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권한을 관리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며, 업무의 위임·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공간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개편함.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활용 등을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공간정보에 접목하여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각종 기후·환경, 교통, 재난·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인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통하여 현실세계를 분석·예측·관제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공간정보산업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보안심사와 관련한 중복적인 절차와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시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보안처리를 거쳐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이·활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나.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함(안 제5조, 제19조 및 제29조).

다.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

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제10조 및 제32조의2).

라.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정보의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마. 디지털트윈국토 운영 등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표준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안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 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안 제34조).

사.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5조).

아.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자.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을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차.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고,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안 제40조).

법률 제 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표현”을 “활용·표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한다.

1의2. “기본공간정보”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고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융복합·활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공간정보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2의2.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기본공간정보를 정리하여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제3조의2제3호 중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본공간정보의 선정·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또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구축·운영 등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하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본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축하여 관리하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고, 품질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중 “기술기준”을 “표준 및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관리기관이 생산·구축한 공간정보를 수집·저장·가공 또는 분석·활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공간정보를 제공한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오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기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간정보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 및 정보이용자 제공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지원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오류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위성정보의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ㆍ관리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성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이하 “국토위성”이라 한다)의 도입과 국토위성을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산ㆍ가공ㆍ보안ㆍ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국토위성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토위성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단서 중 “공공기관”을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주무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를 “주무기관”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축하고자 하는”을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으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공기관”을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축 및”을 “구축 또는 갱신 및”으로, “구축하고자 하는”을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공공기관”을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현실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

활용 기술 등을 통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트윈국토 기반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트윈국토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를 “관리기관”으로 한다.

제3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보안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종전에 보안심사를 받은 관리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관리기관의 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정”을 “지정하여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 운영상 별도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리기관의 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

로, “경우에”를 “경우”로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기관의 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 중 “관리기관”을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보안처리 등) 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위장ㆍ삭제ㆍ흐림처리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보안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2.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처리를 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안처리 및 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3(종전의 제38조의2) 중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

2.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

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제40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1호로 한다.

2.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정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리기관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1의2. “기본공간정보”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고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융복합·활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공간정보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생 략) <신 설>	2. (현행과 같음) 2의2.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기본공간정보를 정리하여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	3. ----------활용·표현----------

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관리의 기본원칙) ----------.

1.·2. (생 략) 3.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4. (생 략)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③ ~ ⑦ (생 략)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신 설> 9.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0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1.·2. (현행과 같음) 3. 기본공간정보---------- ---------- 4.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기본공간정보의 선정·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9.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또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정부의 지원)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 1. ~ 6. (현행과 같음) 7.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구축·운영 등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해안선·행정경계·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하천경계·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하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본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	③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

이 제2항에 따라 구축·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축하여 관리하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

	정보구축기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고, 품질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 표준 및 기술기준----------.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생 략)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관리기관이 생산·구축한 공간정보를 수집·저장·가공 또는 분석·활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에 오류

	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공간정보를 제공한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오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기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5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공간	제25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신 설>	1. 공간정보의 수집·저장·가공·분석·활용 및 정보이용자 제공
<신 설>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및 지원
<신 설>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신 설>	4.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오류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위성정보의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관리·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성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이하 “국토위성”이라 한다)의 도입과 국토위성을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산·가공·

	보안·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국토위성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토위성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생산 또는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주무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 ----------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 주무기관----------.
제27조(자료의 가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를 분석	<삭 제>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1.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 ----------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구축 또는 갱신 및----------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① (생 략)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 ----------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현실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활용 기술 등을 통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트

	윈국토 기반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트윈국토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리기관----------

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보안관리) ① · ② (생 략)	제35조(보안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

	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생 략)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보안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종전에 보안심사를 받은 관리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지정하여 운영----------.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 운영상 별도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우 ----------.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6(보안처리 등) ①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위장·삭제·흐림처리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보안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2.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처리를 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안처리 및 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

<신 설>	1.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
<신 설>	2.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
<신 설>	3.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
<신 설>	2.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2. (생 략)	3.·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생 략)	1. (현행 제3호와 같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삭 제>